

2019년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2. 21.(목)
- 장 소 : 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6명
 - 심의위원 : 박성호(심의위원장), 강상욱, 강호갑, 백대용, 손승우,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안건상정 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등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회의결과

- 제3조 ‘회의록 작성 등’을 ‘회의록 등 작성’으로, 제7조 ‘회의록 공개’를 ‘회의록 등 공개’로 자구 수정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등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전번호 제2019-348호는 제3분과위원회(2019. 2. 8. 개최, 제2019-7회)가 일본 만화를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블로그 게시물이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일본어 학습 목적으로 만화를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안임
- 안전번호 제2019-809호는 제2분과위원회(2019. 2. 14. 개최, 제2019-8회)가 카카오톡 대화방 내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채팅방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외의 기본권이 위축될 가능성,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대화방 전체를 삭제할 가능성,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전체심위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0회 저작권보호심 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성원영 전문위원이 의결안건 제1호 검토내용을 보고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를 온라인과 대면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온라인심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하고 있는데, 온라인심의와 대면심의안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추후 규정개정 시 온라인 심의와 대면 심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추가하겠음
- B 위원 : 제7조 제5항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하는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주요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개한다고 하면 의결에 대한 주요사항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별지2 양식으로 심의의견서를 위원들로부터 받아 기존 회의록 양식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 C 위원 : 온라인심의회는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어 대부분 가결로 의결했으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닌 간략하게 몇 건의 안건 중 몇 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만 공개하면 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힘
- 성원영 전문위원 : 결론만 공개 시 결론에 이른 근거가 미약하다는 외부 시선이 존재할 수 있음
 온라인 심의 시스템에서 부결 의견인 경우에만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결 의견인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 중임
 시스템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위원들께 양해를 구함
- D 위원 : 신설되는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의결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온라인심의회 경우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경우 대부분 이견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지금까지는 이견이 있기 어려운 웹하드상 단순 불법복제물 위주로 온라인 심의회가 이루어졌음
 앞으로 온라인심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별 의견을 낼 수 있는 안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나, 이러한 안건들도 비대면인 온라

인심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분과위원회나 전체심위원회에서 이미 수회 검토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된 사안을 상정할 예정임

- C 위원 : 이견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대면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온라인심이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상호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심의 안건은 이견이 거의 없는 단순 불법 복제물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앞서 말씀드린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안건들의 의미는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으로 정리된 안건들을 말씀드린 것임
- A 위원 : 분과위원회를 개최해보면 동일해 보이는 사안이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세부 사항들이 달라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당 안건들을 온라인심의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기존대로 단순·명백하게 불법복제물임이 확실한 안건들 위주로 상정하는 것이 온라인심의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생각됨
- E 위원 : 종합해보면 온라인심의의 경우 기존처럼 불법복제물이 명확한 안건들 위주로 상정하되, 별지 2호 서식의 심의의견서에 위원들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 일반적인 회의록의 경우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담기고 해당 심의 안건에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담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온라인심의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복제물이 명백한 안건들이어서 심의의견서에 작성될 위원들의 검토의견도 간단할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심의의견서는 위원들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면 될 것이고, 온라인심의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온라인심의의 경우 회의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외부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회의록 불비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해당 심의의견서를 바탕으로 하여 신설되는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경우 손쉽게 해당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현재 회의록을 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온라인심의에 대한 회의가 일주일에 3회 개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심의의 회의록이 빠지게 되면 매주 3개 회의록 공백이 생기게 됨 또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온라인심의의 경우에도 대면심의와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B 위원 : 온라인심의의 경우에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아니어서 회의록이란 명칭이 타당하지 않고, 심의의견서라는 명칭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심의의 경우 회의록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되는 규정 제7조 제5항에서도 회의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

결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심의의견서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서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온라인심의회는 서면심의회에 포함되는 심의방식으로, 서면심의회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가부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에 이르게 된 의견을 기재하게 됨
따라서 온라인심의회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드리는 것이 타당하며, 의견의 기재여부와 기재내용은 위원님들께 맡겨지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 온라인심의회 경우 비대면 특성상 회의록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으므로 신설되는 규정 제3조 표제를 '회의록 등 작성'으로 하고, 규정 제7조 표제의 경우에도 '회의록 등 공개'로 변경하여 회의록 이외의 심의의견서 등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C 위원 : 보호원 홈페이지상 현재 회의록 공개하는 메뉴 명칭이 '회의록'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록 등'이나 '심의결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 홈페이지상 회의록 공개하는 메뉴 명칭을 '심의결과'로 변경하겠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에서 규정 제3조 표제를 '회의록 등 작성'으로 하고, 규정 제7조 표제를 '회의록 등 공

개'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일부 개정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3조 ‘회의록 작성 등’을 ‘회의록 등 작성’, 제7조 ‘회의록 공개’를 ‘회의록 등 공개’로 자구 수정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등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이 의결안건 제2호 검토내용을 보고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E 위원 : 해당 블로그에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 만화 번역 게시물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 1권부터 9권까지 게시되고 있으며, 1권부터 7권까지는 링크 게시물로, 8권부터 9권까지는 직접게시 형태로 게시되어 있음
- F 위원 : 안건 게시물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게시자가 일본어 학습 목적으로 만화를 번역하였을 가

능성 등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여 전
체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게 되었음

- B 위원 : 금번 심의안건과 유사한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8. 10. 17
개최, 제2018-178회) ‘○○○○○’ 회원들이 우리말로 더빙(dubbing)
하여 게시한 코난 영상물의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공유 되고 있어 저
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지만, 금번
심의 게시물의 경우 2018. 2. 14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간된 것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C 위원 : 게시자가 학습 목적으로 만화를 번역하였을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이 게시되어야 하는데 게시자는 한국어로 밖에 게시하고
있어 학습 목적으로 보이지 않음
일본만화의 경우 일본에서 먼저 화단위의 만화가 연재되고 상당기간이
지나 한국에서 권 단위의 만화로 정식 발매되고 있는데, 게시자는 일
본에서 정식 발매된 후 바로 화 단위로 올리고 있음
비록 한국에서 정식 발매되고 있는 내용과 일부 다른 해석이 있지만
침해여부가 명확하며 이런 경우 한국에서 합법 출판물이 시장에 설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A 위원 : 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블
로그는 “오타/오역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글씨 틀린 것은 수정
완료” 등 표현에 비춰보면 온라인상 공부 및 소통 등의 목적인 것
으로 보여 통상의 합법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그림과 글이 동시에 게시되어 만화

가 전달하려는 가치가 전달된다고 생각함

- E 위원 : 해당 블로그에 해당 저작물 전부가 게시되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며) 해당 블로그에 정식 발매된 다른 화가 전부 게시되어 있음
특히 해당 화는 우리나라에서 2018. 2. 14 전자책으로 발매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게시자는 2018. 2. 10.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렸음
- E 위원 : 만약 해당 블로그에 심의대상 게시물 하나만 게시되어 있으면 일본어 학습 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저작물의 다른 화(畵)가 전부 올라와 있음
위 사안은 우리나라 발매일 전 게시된 점, 실제 게시자가 학습목적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블로그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해당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서도 그 블로그를 통해 해당저작물의 상당부분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합법적 경제적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사료됨
- A 위원 : 해당 블로그에 다수의 번역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아마추어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감상을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B 위원 : 해당게시물과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의역은 있지만 만화그림과 글이 동시에 게시되고 있으므로 원 저작물의 내용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음
또한 게시자는 1화부터 70화까지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측면에서

충분히 원 저작물을 사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오프라인 만화책의 경우 만화 팬덤(fandom)이 고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한번 보고 나면 소장욕구나 감상욕구가 떨어지기 마련임

해당 온라인 전자책의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팬덤(fandom)이 형성되어 있는 독자들은 소장욕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부분의 독자들은 해당 블로그에 다수의 저작물이 게시되고 있어 합법적인 콘텐츠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 F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시정권고를 하는 기본적 입장은 동의하나 어떤 사람들은 학습 목적으로 만화를 번역하고 게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 스크랩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밀 댓글을 남기면 출처를 남기는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문구가 있어 심의대상 게시물은 학습 목적보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임

- E 위원 : 일본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만화의 이용이라면 특정 만화만이 아닌 여러 다른 만화도 제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만화를 이용해 일본어 학습을 돕는 글이 함께 게재되어 있어야 그러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심의대상 게시물 블로그는 특정 만화의 번역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제공 목적이 강하다 판단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348호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이 안전번호 제2019-809호 검토내용을 보고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D 위원 : 심의대상 오픈채팅방에 불법 공유된 파일을 다른 오픈채팅방에 게시하면 다시 공유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러하며 또한 심의대상 오픈채팅방에는 자체 규정이 있어 같은 날에 두 번 동일한 저작물을 요청하지 못함
- E 위원 : 구체적 쟁점이 없어 시정권고에는 무리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하였으나 심의안을 제2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이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불법복제물 제공이 문제가 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의 공유가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임
- D 위원 : 새로운 유형이기는 하지만 게시판 단위로 폐쇄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원칙을 정해 따르면 큰 무리는 없겠다 판단됨
- A 위원 : 심의대상 오픈채팅방 목적 자체가 불법복제물 공유이므로 오픈채팅방의 방 자체를 폐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여러 가지 집행 유형이 있겠으나, 집행은 보호

원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에 관한 부분만을 판단하면 될 것임

- D 위원 : 방을 운영하는 운영진은 무엇을 목적으로 심의대상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오픈채팅방 이용자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픈채팅방 운영자는 많은 사람에게 음원파일을 나누고 칭찬을 받는 점이 그저 좋다고 대답했음
- C 위원 : 운영은 선의이더라도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없는 것이 안타까움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809호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등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 경고 등 시정권고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o 박성호 심의위원장이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26.

심의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상욱

위원 강호갑

위원 백대용

위원 손승우

위원 정태호